

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1996년 12월 21일
- 회부일자 : 1996년 12월 21일

3. 제정이유

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로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시행령이 정한 산정기준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,

동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등이 개정('96. 7. 1)됨에 따라 우리도의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를 이 기준에 맞추어 개정함으로서 도로점용료 징수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.

4. 주요골자

○ 도로점용료 산정금액 절사 <조례 제3조 제5항>

- 10원 미만 → 100원 미만

○ 점용물의 종류중 수도관 및 기타관의 직경구분을 세분화 <별표 1>

『직경 1m초과』 → 『직경 1.0m초과~2.0m이하, 직경 2.0m초과~3.0m이하, 직경 3.0m초과』로 세분

○ 돌출간판을 간판에 포함 명문화 <별표 1>

○ 소액 부징수 <조례 제5조>

· 500 미만 → 5,000원 미만

5. 검토의견

도로법 시행령에 개정됨으로써 국도점용료 산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관리 및 징수기준의 통일을 기하기 위한 개정 조례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